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및 쟁점

이 순 호

2016. 05. 30.



목 차

- I.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개요
- II.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관련 쟁점
- III. 요약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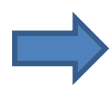
목 차

I.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개요

추진배경: 장기미사용 소액계좌의 정리 필요성

◆ 장기미사용 소액계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잠재

-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 경과 후 미해지 계좌가 전체 계좌의 절반(44.7%, 1억2백만개, '15.12월말 기준)에 육박
 -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 경과 후 미해지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은 총 14.4조원('15.12월말 기준)으로 전체 대비 2.4% 수준
- 국내 은행은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고객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지할 유인이 없음.
-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경우 고객 인지가 늦기 때문에 적절한 초기대응이 곤란하여 피해가 커질 우려
- 최근 대법원 판결로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의 이전이 정지된 가운데 은행은 장기미사용 계좌에 대한 별도 처리 방안이 없어 계좌관리비용이 누적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일목요연하게 '조회' 하고 불필요한 계좌는 자발적, 효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가칭) 주요 기능

- ◆ **계좌조회:** 온라인상에서 전체 은행권의 본인계좌 관련 은행명, 계좌번호, 이용상태(예: 활동성/비활동성) 등을 일괄 조회
 - 활동성/비활동성 등에 대한 정의가 필요: 장기미사용 계좌, 휴면계좌 등의 개념을 재정립
- ◆ **잔고이전:** 장기미사용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명의 계좌'로 이전
 - 잔고이전 대상 및 수취 계좌의 범위 등을 결정할 필요
 - 이 경우 자금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필요
- ◆ **계좌해지:** 일정 기준 충족 계좌의 해지도 계좌주 본인의 결정으로 가능
 - 해지 대상 계좌의 범위 등도 결정할 필요
 - 이 경우 은행간 과당 경쟁 등을 고려할 필요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기대효과

◆ 금융소비자, 은행 등 경제 주체별로 경제적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 소비자: 장기미사용 계좌에 방치되었던 자금을 회수하여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사용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스스로 차단하여 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 은행: 미사용 계좌 유지·관리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
- 휴면예금관리재단: 계좌주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른 기부 행위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자원 마련에 기여
- 금융안전성: 미사용계좌의 금융사기 악용 소지를 차단하여 지급결제 관련 안전성 제고

목 차

II.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관련 쟁점

1. 대상 계좌 범위 및 유형
2. 서비스 채널
3. 조회 시 제공 정보의 범위
4. 해지 및 잔고 이전
5. 사망자 계좌 처리
6. 장기미사용계좌 감소의 근본 해결방안
7. 현행 유사서비스 전산시스템과의 관계 설정

목 차

II.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관련 쟁점

1. 대상 계좌 범위 및 유형
2. 서비스 채널
3. 조회 시 제공 정보의 범위
4. 해지 및 잔고 이전
5. 사망자 계좌 처리
6. 장기미사용계좌 감소의 근본 해결방안
7. 현행 유사서비스 전산시스템과의 관계 설정

대상계좌 범위 및 유형

- ❖ 일반 소비자의 장기미사용 계좌를 자발적, 효율적으로 정리하자는 서비스 도입목적에 맞게 대상을 가급적 폭넓게 설정



- ◆ 서비스 제공 대상: **개인 고객(개인사업자 포함)에 한정**
 - 법인, 임의단체, 국고, 공동명의 계좌는 제외
- ◆ 계좌 범위: **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예금, 외화예금까지 포함**
 - 미결제 자금 등을 일시 예수하는 계정, 시장성 수신, 타인명의 및 비금전 신탁 등 제외
 - 공공예금, 국고예금, 별단예금, 비거주자예금 및 은행간예금을 제외한 모든 예금
 - 금전신탁 중 퇴직신탁운용, 퇴직연금신탁은 회사와 개인명의로 혼재되어 있어 제외
 - 창구거래만 가능하도록 고객이 요청한 **보안계좌도 제외**
- ◆ 계좌유형: **잔고이전을 받기 위해 활동성 계좌도 포함**
 - 활동성 여부 판단 기준의 설정 필요: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조회일까지의 경과기간 기준(예를 들면 1년 또는 3년)으로 판단

은행 계좌 현황('15.12말 기준)

- ◆ (계좌수) 은행권 계좌는 총 2.4억개로 이 중 개인계좌는 2.3억개(96%), 법인계좌가 1천만개(4%) 수준
- ◆ (잔액) 계좌의 잔액은 총 1,264조원으로 이 중 개인계좌의 잔액은 609조원(48.2%), 법인계좌의 잔액은 655조원(51.8%) 수준

(단위: 백만건,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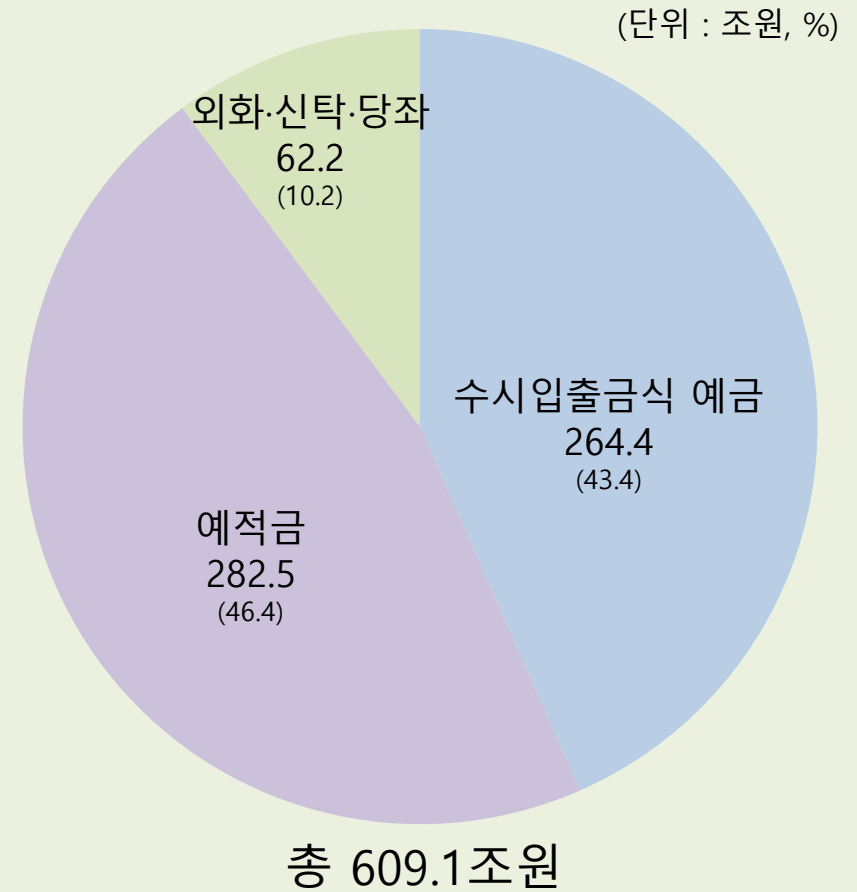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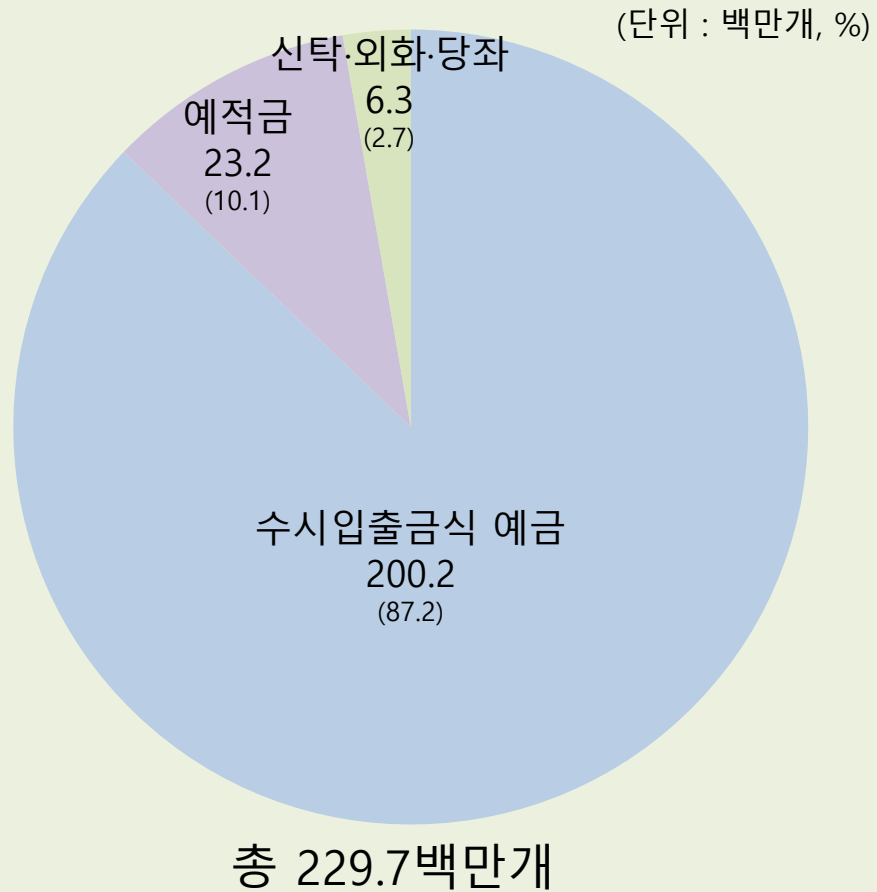
구분				총 계		개인		법인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은행권 수신상품	예금	원화	수시입출금식	206.5	474.8	200.2	264.4	6.3	210.4
			당좌예금	0.8	3.6	0.7	0.9	0.1	2.7
			예적금	24.9	620.0	23.2	282.5	1.7	337.5
			소 계	232.2	1,098.4	224.1	547.8	8.1	550.6
		외화예금	2.9	73.3	2.5	11.8	0.4	61.5	
		예금 총계	235.1	1,171.7	226.6	559.6	8.5	612.1	
		신탁	3.1	92.6	3.1	49.5	0.04	43.1	
		은행권 수신 상품	238.2	1,264.3	229.7	609.1	8.5	655.2	

자료: 금융감독원

대상 계좌 현황 ('15.12말 기준)

< 은행권 개인 예금 계좌 수 >

< 은행권 개인 예금 계좌 잔액 >



자료: 금융감독원

<참고> 국내은행 예수금계좌 종류

◆ 금융감독원 은행업무보고서 대차대조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비고
원화 예수금	요구불예금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별단예금, 공금예금 , 비거주자원화예금, 비거주자자유원예금, 국고예금 , 기타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목돈마련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비거주자원화예금, 비거주자자유원예금, 저축예금, 가계우대정기적금, 기업자유예금, 근로자장기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기타저축성예금	
	수입부금		
	주택부금		
양도성 예금증서	은행간 CD		
	대고객 CD		
외화 예수금		외화당좌예금, 외화보통예금, 외화통지예금, 외화정기예금, 외화별단예금 , 기타외화예수금	
역외외화 예수금		금융기관예수금, 기타예수금	

주: 붉은색 글씨 예금은 서비스대상에서 제외
대고객 CD 중 일부 통장식만 포함

<참고> 국내은행 신탁계정 종류

◆ 금융감독원 신탁업무보고서 대차대조표

대분류	세분류	비고
금전신탁	<p>불특정금전신탁합동운용(5), 적립식목적신탁합동운용, 가계금전신탁합동운용, 개발신탁합동운용, 노후생활연금신탁합동운용, 기업금전신탁합동운용, 국민주신탁합동운용, 근로자퇴직적립신탁합동운용, 개인연금신탁합동운용, 가계장기신탁합동운용, 근로자우대신탁합동운용, 신종적립신탁합동운용, 퇴직신탁운용(2), 특정금전신탁(8), 단위금전신탁합동운용, 추가금전신탁(2), 부동산투자신탁, 신개인연금신탁합동운용, 신노후생활연금신탁합동운용, 신근로자우대신탁합동운용, 연금신탁합동운용), 퇴직연금신탁(3)</p>	
재산신탁	<p>유가증권의신탁(3), 금전채권의신탁, 동산의신탁, 부동산의신탁(7), 지상권의신탁, 전세권의신탁, 부동산임차권의신탁, 무체재산권의 신탁</p>	
종합재산신탁	<p>금전수탁, 유가증권수탁, 금전채권수탁, 부동산수탁, 기타재산수탁</p>	
공익신탁	<p>자선신탁, 육영신탁, 학술기예신탁, 체육진흥신탁, 기타의공익신탁</p>	
담보부사채신탁		
기타 신탁		

주: 붉은색 글씨 예금은 서비스대상에서 제외

비활동성 계좌 수 현황 ('15.12말 기준)

- ◆ (1년 기준) 국내은행 계좌 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거나 만기가 경과 후 해지하지 않은 계좌 중 지급정지계좌를 제외한 것은 총 77.3백만개(33.6%)
- ◆ (3년기준) 3년이상 기준 적용 시 총 55.6백만개(24.2%)

(단위 : 백만개, %)

	전체	미사용기간 1년				미사용기간 3년			
		비활동성		서비스 대상	비중	비활동성		서비스대상	비중
		(B)	지급 정지 (C)			(b)	지급 정지 (c)		
(A)	(B)	(C)	(D=B-C)	(E=D/A)	(b)	(c)	(d=b-c)	(e=d/A)	
수시입출금	200.2	97.5	25.2	72.3	36.1	71.6	19.9	51.7	25.8
예적금	23.2	2.2	0.0	2.1	9.2	1.6	0.0	1.5	6.6
신탁	3.1	0.7	0.0	0.6	21.0	0.6	0.0	0.6	19.4
외화예금	2.5	1.8	0.1	1.7	69.7	1.4	0.1	1.3	52.7
당좌예금	0.7	0.5	0.0	0.5	67.1	0.5	0.0	0.5	62.0
계	229.7	102.6	25.4	77.3	33.6	75.6	20.0	55.6	24.2

주: 지급정지계좌는 압류, 사망, 전자사기이용계좌 등의 사유로 출금 및 해지가 불가능한 계좌
 자료: 금융감독원

비활동성 계좌 금액 현황 ('15.12말 기준)

- ◆ (1년 기준) 국내은행 계좌 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거나 만기가 경과 후 해지하지 않은 예금액은 총 13.8조원(2.3%)
- ◆ (3년 기준) 비활동성 기준이 3년일 경우 예금액은 총 7.8조원(1.3%)

(단위 : 조원, %)

	전체 (A)	미사용기간 1년				미사용기간 3년			
		비활동성		서비스 대상 (D=B-C)	비중 (E=D/A)	비활동성		서비스대상 (d=b-c)	비중 (e=d/A)
		(B)	지급 정지 (C)			(b)	지급 정지 (c)		
수시입출금	264.4	5.8	0.5	5.4	2.0	2.1	0.3	1.8	0.7
예적금	282.5	6.4	0.1	6.3	2.2	5.3	0.0	5.3	1.9
신탁	49.5	0.7	0.0	0.7	1.4	0.3	0.0	0.3	0.7
외화예금	11.8	1.5	0.0	1.4	12.2	0.5	0.0	0.5	3.9
당좌예금	0.9	0.0	0.0	0.0	0.8	0.0	0.0	0.0	0.7
계	609.1	14.4	0.6	13.8	2.3	8.2	0.3	7.8	1.3

주: 지급정지계좌는 압류, 사망, 전자사기이용계좌 등의 사유로 출금 및 해지가 불가능한 계좌
 자료: 금융감독원

목 차

II.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관련 쟁점

1. 대상 계좌 범위 및 유형
2. 서비스 채널
3. 조회 시 제공 정보의 범위
4. 해지 및 잔고 이전
5. 사망자 계좌 처리
6. 장기미사용계좌 감소의 근본 해결방안
7. 현행 유사서비스 전산시스템과의 관계 설정

서비스 채널

- ◆ 가능한 채널: 별도 인터넷 사이트 구축, 은행 창구, 개별 은행 인터넷뱅킹,...
- ◆ 정보제공 처리방식: 실시간, 사전 정보 집중(Data Base 구축),...
- ◆ 본인 확인 방식: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고려사항		
채널	처리방식	본인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구축은 어떤 채널이 라도 새로 구축 필요 ◆ Payinfo가 이미 구축되어 계좌와 연결된 결제정보 통합관리 중 ◆ 별도 사이트가 있는 것이 소비자 인식에도 유리 ◆ 은행 간 과당경쟁 및 민원 발생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 변동되는 계좌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 ◆ 금융정보 집중은 설비 투자의 비용 문제 ◆ 빅브라더 논란 및 해킹 시 정보 유출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계좌 무단 조회 방지 ◆ 개인 프라이버시 존중 ◆ 안전성과 범용성을 고려

서비스 채널

◆ **Account info 시스템을 구축하여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인터넷 등 온라인 사용이 원활하지 못하는 고객을 위해 창구에서도 제한된 범위에서 서비스 제공

◆ **Account info 이용 시 본인 확인: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의 2단계로 강화**

- 가족과 공인인증서를 공동 사용하는 개인이 다소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의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별도 추가인증 절차가 필요
- 이용자를 만 19세 이상 내국인으로 한정(공동명의, 미성년자, 피후견인, 외국인 명의계좌 제외)

◆ **각 은행과 Account info 간 실시간 처리방식으로 제공**

- 수시 변동되는 계좌정보를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여 신뢰성 제고
- 은행 대상 의견조회 결과도 실시간 처리를 선호
- Account info 관리 중계기관도 금융정보를 집중할 필요가 없어 정보누출 및 오남용 우려 불식 가능

별도 시스템의 적법성: 실명법 및 개인정보법 관련

- ◆ 실시간 조회이든 사전 DB 방식이든 고객의 계좌정보를 금융회사가 시스템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 검토 필요
- ◆ (실명법 관련) 계좌정보는 명의인의 요구 또는 법원영장 등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 가능(법§4①)
 - 실시간 조회방식은 명의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고, '요구자가 명의인인지 여부 확인'은 은행이 수행해야 하는데(영§7①), Acc. Info 관리자인 금융결제원 또는 은행(창구 등에서 처리시)이 수탁하여 처리
 - 사전 DB 방식은 '금융회사 상호간 업무협약'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으로 해석 가능하여 법§4①v에 의거 적법
- ◆ (개인정보법 관련)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법§24-2①)
 - 실시간 처리이든 사전 DB 방식이든 실명법 상 허용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적법

목 차

II.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관련 쟁점

1. 대상 계좌 범위 및 유형
2. 서비스 채널
3. 조회 시 제공 정보의 범위
4. 해지 및 잔고 이전
5. 사망자 계좌 처리
6. 장기미사용계좌 감소의 근본 해결방안
7. 현행 유사서비스 전산시스템과의 관계 설정

조회 시 제공 정보의 범위

◆ Account Info에서 고객이 직접 조회 시 최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

- **은행명:** 개설한 은행 확인
- **지점명:** 지점명을 통해 가입경로 유추 가능
- **개설일:** 개설시점에 따라 가입경로 유추 가능
- **만기일:** 만기해지 또는 재예치 필요성 판단 가능
- **최종입출금일:** 입금 및 출금한 날짜(조회·이자결산일 제외)
- **상품명:** 상품명에 없는 경우에는 계정과목 기재
- **계좌번호:**마스킹 처리하지 않고 전체 노출
- **잔액:** 잔고이전 및 해지가능 계좌만 제공
- **부기명:** 고객이 기재한 계좌별명 등
- **활동성/비활동성 여부**

◆ 별도 채널(예를 들면 은행 창구)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일부 고객을 위해 은행 창구를 통해 서비스 제공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제3자가 정보를 볼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조회 시 제공 정보의 범위

◆ 창구 조회 시 제공 정보(예시)

- 활동성, 비활동성 계좌 모두 현황표(A)는 제고하고, 비활동성계좌에 한해 세부현황표(B)를 제공

은행 계좌 현황표(A)

구분	계좌건수				
	수시 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은행	1건	2건	0건	0건	0건
☆☆은행	2건	3건	1건	0건	0건

은행별 비활동성계좌 세부현황표(B)

은행명	종류	만기일 (최종입출금일)	지점명	계좌번호	부기명
□□은행	수시입출금식	2013.01.01.	△△지점	1234-5678-910	OO동창회
□□은행	예·적금	2013.12.31.	♣♣지점	1234-5678-911	-
□□은행	예·적금	2013.12.31.	♣♣지점	1234-5678-912	-

목 차

II.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관련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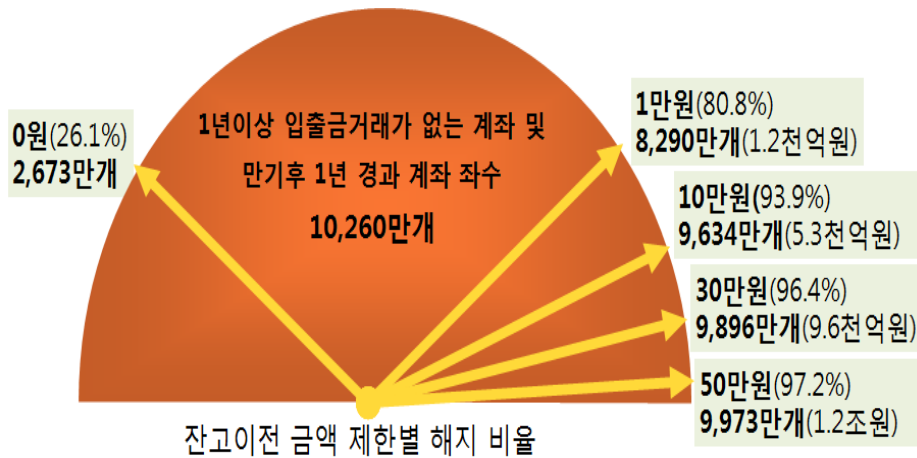
1. 대상 계좌 범위 및 유형
2. 서비스 채널
3. 조회 시 제공 정보의 범위
4. 해지 및 잔고 이전
5. 사망자 계좌 처리
6. 장기미사용계좌 감소의 근본 해결방안
7. 현행 유사서비스 전산시스템과의 관계 설정

해지 및 잔고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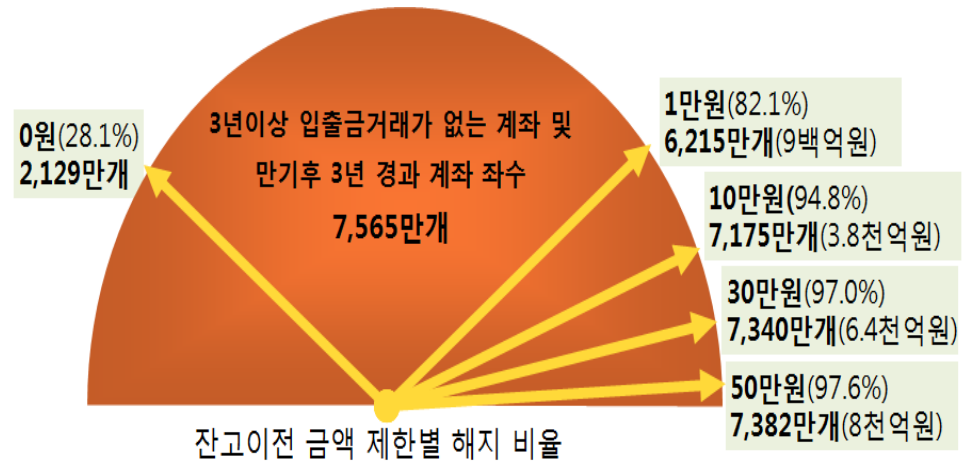
◆ 출금계좌: Account info에서 직접 잔고이전 및 해지할 수 있는 계좌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에 한해 허용

- 소액: 10, 30, 또는 50만원으로 기준을 설정

비활동성 기준: 1년 적용



비활동성 기준: 3년 적용



자료: 금융감독원

◆ 입금계좌: 본인 명의 활동계좌 중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와 미소재단 계좌

-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잔액을 기부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

해지 및 잔고이전

- ◆ **이체금액: 계좌정리가 목적이므로 잔고이전은 해지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잔고이전 시 잔고 전액만 가능**
 - 이체 금액을 잔고범위 내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하면 소액 비활동성계좌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액 이전만 가능하도록 함.
 - 또한 '일부는 기부, 일부는 본인계좌로 이전하는 것'은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해지 후 잔고이전" 방식을 취하게 되어 은행직원 업무 부담, 시스템 과부하 등의 문제 야기 가능
- ◆ **잔고이전 시 금융실명법 및 보이스포싱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실명확인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
- ◆ **해지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하도록 해지 절차에 포함**

해지 및 잔고이전

- ◆ 계좌해지 전 해당 계좌에 자동이체가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Payinf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 ◆ 외화예금의 경우 조회는 기준시점(예: 당일 1회차 매매기준율) 환율로 금액을 참고용으로 보여줄 수 있으나 해지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청구 해지가 바람직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보이스피싱법)
 -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②저축성 예금·적금 등을 해지하는 경우 ③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의무(법§2-4 및 영§2-3)
 - ① 금융회사의 고유·겸영·부수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본질적 업무가 아닌 행정적 업무이므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를 금결원에 위탁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② Account info 로그인 시점에서 본인확인을 거친 후 은행계좌 조회·해지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지신청 시점에서 재차 본인확인을 거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③ 금융회사에 '기등록'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용자의 금전피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잔고 '0'인 계좌만 해지신청 가능하므로) '해지신청시 등록'한 전화번호 이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제공 서비스의 범위

- ◆ 제공 정보 범위, 해지 및 잔고이전 가능성 등에 대해 계좌별, 유형별로 제공 서비스를 차별화

계좌별 제공 서비스

구 분	계좌조회	계좌해지·잔고이전
수시입출금식	○	○
예·적금	○	○
신탁	○	실시간·장부가로 해지가 가능한 불특정금전신탁대상
당좌예금	○	X
외화예금	거주자계정 대상	X

계좌유형별 제공 서비스

구 분		계좌조회		계좌해지· 잔고이전**
		계좌정보	잔고*	
활동성계좌		○	○	X
비활동성 계좌	고액	○	○	X
	소액	○	○	○

주*: Acc. Info에서 제공되는 것이며, 은행창구에서는 활동성 계좌는 현황표만 제공하고, 비활동성 계좌는 잔액정보 미제공

주**: Acc. Info에서 제공되는 것이며, 은행창구에서는 잔고이전 및 해지 미제공

목 차

II.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관련 쟁점

1. 대상 계좌 범위 및 유형
2. 서비스 채널
3. 조회 시 제공 정보의 범위
4. 해지 및 잔고 이전
5. 사망자 계좌 처리
6. 장기미사용계좌 감소의 근본 해결방안
7. 현행 유사서비스 전산시스템과의 관계 설정

사망자 계좌 처리

◆ 사망자 계좌는 상속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가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

- 다수의 상속인 존재, 법적대리인 이슈, 유언의 유무 등 상속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
- 피상속인의 실제 사망 여부와 상속인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여 온라인 처리는 신중할 필요

◆ 현재 오프라인에서 제공 중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투자회사, 보험 등 대부분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 가능
- Acc. Info는 은행계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제공하므로 포괄 범위가 제한적
- 따라서 Acc. Info 화면 구성에서 사망자 계좌 조회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Acc. Info에서는 본인 계좌에 대해서만 이용 가능함을 명시
- 다만 상속인임이 오프라인에서 확인된 고객에 한해 은행 창구에서 Acc. Info로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정보 조회 가능하도록 함.

목 차

II.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관련 쟁점

1. 대상 계좌 범위 및 유형
2. 서비스 채널
3. 조회 시 제공 정보의 범위
4. 해지 및 잔고 이전
5. 사망자 계좌 처리
6. 장기미사용계좌 감소의 근본 해결방안
7. 현행 유사서비스 전산시스템과의 관계 설정

장기미사용계좌 감소 방안

◆ 잔고가 0인 장기미사용 계좌의 경우 은행 직권으로 또는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예금거래기본약관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예: 1년 이상 잔액 0원이 지속) 충족 시 자동해지하는 방안을 추진
- 이 경우 무연고자의 잔고없는 장기미사용 계좌도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증장기적으로 금융권 미청구자산의 처리를 위한 입법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외국의 경우 미청구자산법(Unclaimed Property Law)을 제정하여 금융권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미청구 자산을 정부에서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원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 채무자의 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것임.

◆ 또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계좌 유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 가능

약관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 잔고가 0인 장기미사용 계좌를 은행 직권으로 또는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약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필요

- 현행 예금거래기본약관(§16③)은 은행이 예금계약을 임의 해지시 서면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해지 가능한 사유를 명시하지는 않음.
- (민법상 해지권 행사) 약관상 해지사유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예금계약은 민법상 소비임치계약으로서(대법원2005다64552), 소비임치계약의 법정해지권(민법§699)을 행사 가능
 - 다만 장기미사용 계좌 해지를 위한 법정해지권 행사 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서면통지 비용 부담 및서면통지 미도달 시 해지 유효성에 대한 분쟁가능성은 존재
- (약관법)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은 무효(약관법§9ii)
 - 잔액 0원인 계좌에 대해 장기미사용을 약정해지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소비임치계약의 법정해지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 가능
- 다만 약관 개정 이전 개설 계좌는 새로 적용되는 약관에서 규정한 자동해지 또는 직권해지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린 후 해지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

목 차

II.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관련 쟁점

1. 대상 계좌 범위 및 유형
2. 서비스 채널
3. 조회 시 제공 정보의 범위
4. 해지 및 잔고 이전
5. 사망자 계좌 처리
6. 장기미사용계좌 감소의 근본 해결방안
7. **현행 유사서비스 전산시스템과의 관계 설정**

현행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과의 관계

◆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sleepmoney.or.kr)은 각 금융협회가 소속 금융회사 보유 휴면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

- 2006년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우체국은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은행연합회는 사원은행과 휴면계좌 정보 제공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시스템 구축
- 휴면예금관리재단 사이트는 재단 출연분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정보를, 각 협회 사이트(sleepmoney, 생보, 손보)는 금융회사 보유분 및 재단 출연분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정보를 제공

◆ Acc. Info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시스템 통합은 중장기적 과제로 고려할 필요

-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의 리스계약이 남아 있고, 해당 시스템이 은행권 PF 대출 상시감시시스템, 대출모집인 관리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어 Acc. Info와 통합되어 폐쇄되면 동 시스템을 별도 구축해야 함.

목 차

III. 요약 및 결론

요약 및 결론

- ◆ 시스템 안정 및 적극 활용으로 효과 극대화 기대

- ◆ 금융권 계좌 조회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통합

- ◆ 미청구자산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필요: 중장기적으로 장기미사용 계좌를 일괄적으로 관리, 처리하기 위해 외국의 미청구자산법을 참고

- ◆ 은행 계좌 유지 수수료 도입, 예금거래기본약관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해 나갈 필요
 - 자동해지를 위한 예금거래기본약관 개정이 곤란할 경우 수시입출금식에 한해 일정 조건 충족 시 이자지급 중지도 고려(소멸시효의 실질적 완성)

<참고> 외국의 미청구자산법

◆ 현재 미국, 아일랜드, 영국, 일본 등에서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고객의

미청구자산(unclaimed property)을 고객에게 반환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

- 미국은 1950년대 중반 주(state) 단위로 미청구재산법(unclaimed property act)을 제정하여 주 정부가 금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고객의 미청구재산을 이양받아 관리
- 아일랜드는 2001년 휴면예금법(Dormant Account Act), 2003년 휴면생명보험법을 제정하여 15년 동안 고객과 거래가 없는 휴면예금계좌 또는 보험상품에 따라 5년 또는 15년 동안 연락이 두절된 보험계약을 재무성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이전하여 관리
- 영국은 2008년 Dormant Bank and Building Society Accounts Act를 제정하여 희망하는 은행에 한해 1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고객예금을 금융감독청이 승인한 반환기금(reclaim fund)으로 이전하여 관리
- 일본 의회는 2015년 6월 휴면예금의 원권리자를 보호하면서 동 자금을 민간공익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면예금활용법안'을 제정

◆ 외국에서 미청구자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유는 원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이를 보유한 금융기관 등의 관리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함임.

- 특히 미국과 같이 채권소멸시효가 없는 나라의 경우 휴면예금의 원권리자가 나타나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는 많은 관리비용이 소요되며, 임의 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따른 법적 비용도 소요
- 이에 따라 금융회사로 하여금 채권자에 대한 채무관계를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인 금융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청구자산관리법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일괄 관리

고맙습니다!